

제 238 호

1972. 6. 1.

등록번호: 제 39 호

등록년월일: 1953년 6월 18일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편집인: 공보실장 손왈수

인쇄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시보

이 일로보준...
권필요...
1972. 6. 1.
서울특별시 시민국장

1. 조	례		3
제 712 호	서울특별시 소방본부 설치조례		3
2. 규	칙		3
제 1219 호	서울특별시 소방본부 직제		3
제 1220 호	서울특별시 환경순찰반 직제		5
3. 고	시		6
제 69 호	사토성분등록사항		6
4. 공	고		6
제 119 호	도시계획지구결정 (고도지구)		6
제 120 호	도시계획지구로 일부변경결정		7
제 121 호	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		7
명 의	변경		7
5. 사	령		8
〔	정	정〕	 8

1. 시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소방본부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

1972년 5월 31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712 호

서울특별시소방본부설치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시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소방본부(이하 소방본부라 한다)를 둔다.

제 2 조 (직무) 소방본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화재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
2. 화재위험도 조사 및 측정에 관한 사항
3. 소방교육훈련 및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
4. 기타 소방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
제 3 조 (본부장) ① 소방본부에는 본부장 1인을 두되 2급갑류 또는 2급을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②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방본부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.

제 4 조 (하부조직) 소방본부의 하부조직

은 서울특별시규칙으로 정한다.

제 5 조 (소방본부의 위치) 소방본부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.

제 6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소방본부직제를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1972년 5월 31일

◎ 서울특별시규칙 제 1219 호

서울특별시소방본부직제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소방본부(이하 본부라 한다)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본부장) ①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.

②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.

제 3 조 (정원)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한다.

제 4 조 (하부기구) 본부에 소방행정과, 방호과와 지령실을 두고 각과장은 소방총경으로 지령실장은 소방경정, 소방경감 또는 지방소방경감으로 보한다.

제 5 조 (소방행정과) ①소방행정과에 서무계와 장비계를 두고 계장은 소방경정, 소방경감 또는 지방소방경감으로 보한다.

②소방행정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서 무 계

- 가. 소방연혁에 관한 사항
 - 나. 의식 및 회의에 관한 사항
 - 다. 순별, 순시에 관한 사항
 - 라. 당직 및 청중 단속에 관한 사항
 - 마. 직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 - 바. 교육에 관한 사항
 - 사. 인사에 관한 사항
 - 아. 사무인제인수에 관한 사항
 - 자. 보안에 관한 사항
 - 차. 연금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
 - 카. 소방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
 - 타.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
 - 파.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
 - 하. 소방력 기준책정에 관한 사항
 - 거. 소방관할 구역책정에 관한 사항
 - 너. 복제에 관한 사항
 - 더. 본부내 타과, 실 및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- #### 2. 장 비 계
- 가. 소방에 산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

- 나. 소방에 산집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
- 다. 세입, 세출 및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
- 라. 물품출납보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
- 마. 차량 및 장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- 바. 소방관서의 시설유지에 관한 사항
- 자. 운전원 기술지도

제 6 조 (방호과) ①방호과에 방호계와 예방계를 두고 계장은 소방경정, 소방경감 또는 지방소방경감으로 보한다.

②방호과의 개별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방 호 계

- 가. 경방계획 및 화재진입에 관한 사항
- 나. 화재통제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
- 다. 화재현장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- 라. 화재방어검토 회의에 관한 사항
- 마.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바. 화재증명에 관한 사항
- 사.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
- 아. 위험물 취급주임 면허시험 및 교양에 관한 사항
- 자.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2. 예 방 계

- 가. 소방검사에 관한 사항
- 나. 소방훈련지도에 관한 사항
- 다. 불조심 제명지도에 관한 사항
- 라. 소방시설 축진에 관한 사항
- 마. 소방수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- 바. 화재 경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
- 사. 방화관리자 강습에 관한 사항
- 아. 건축허가 및 준공에 관한 협조등의

자. 건축 및 소방 시설 민원조사
차. 무점점 소방용 기계기구 단속에
관한 사항

카. 방화순찰에 관한 사항
타.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

제 7 조 (지령실) 지령실의 분장사무는
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소방통신 유지관리
2. 화재발생각지 수보 및 출동지령에
관한 사항
3. 화재속보에 관한 사항
4. 통신요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5. 무선통신암호 조립 및 분석에
관한 사항
6. 관제기관 통보에 관한 사항
7. 기타 통신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규칙은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환경순찰반직제를 제정하여
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1972년 5월 31일

◎ 서울특별시 규칙 제 1220 호

서울특별시 환경순찰반직제

제 1 조 (목적)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제
반요소를 현지확인 점검하여 신속히
제거함으로서 품위있고 명량한 환경을
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순찰반(이하 순
찰반이라 한다)을 둔다.

제 2 조 (직무) 순찰반은 시장의 영을
받아 서울특별시의 환경조성을 위한
다음 사항을 현지 확인하여 환경상
실로 보고 시장의 지시를 받는다.

1. 거리환경 및 질서정비
2. 녹지 및 개간
3. 주택 및 건축
4. 일반현지 민원접수처리와 기타 시
장이 지시하는 사항

제 3 조 (반장) ①순찰반에 반장을 두고
반장은 2급 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②반장은 확인된 사항과 처리결과를 시
장에게 보고하는 책임을 지며 소속직
원을 지휘감독한다.

제 4 조 (정원) 순찰반에 두는 공무원의
정원은 따로 정한다.

제 5 조 (하부조직) ①순찰반은 분야별로
확인점검을 전담키 위하여 3개로 편
성하되 각조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

1. 제 1 조

가. 도로 뒷골목 정비상황

나. 돌출물 지장물 간판정비상황

다. 도로공공시설물 정비상황

라. 가로등 보안등 정비상황

마. 교통질서 및 노점잡상인 단속상황

바. 기타 거리환경 및 질서에 관한
사항

2. 제 2 조

가. 임야개간지 사후 관리상황

나. 절개지 단장 상황

다. 사방 및 조림상황

라. 녹지대 및 공원관리상황

마. 기타 녹지 및 개간에 관계되는
사항

3. 제 3 조

가. 무허가 건물단속 상황

나. 도로변 노후불량건물 개량상황

다. 위험축대 및 담장보수상황

라. 아파트주변 환경정비상황

마. 기타 주택 및 건축분야

제 6 조 (위임규정) 환경순찰반의 운영과
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
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69 호

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9 조의 규정에

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성분 등록을
고시한다.

1972. 5. 30.

서울특별시장

사 료 성 분 등 록 사 항

등록 번호	공장명	소재지	대표 성명	사 료			사 료 성 분 량				유효기간 (까지~부터)	비고
				종 류	명 칭	용 도	최 소 량		최 대 량			
							조 단 백질	조 지방	조 섬유	조 회분		
3-62	영육농장 사료공장	동대문구 신내동528	김영희	배합사료	어린돼지 배합사료	생후대략 2-4개월	이상 15.0%	이상 2.0%	이하 7.0%	이하 9.0%	1972.5.30 1974.5.29	신규
3-63	"	"	"	"	중돼지 배합사료	생후대략 4개월 부터 8개월 까지	13.0%	2.0%	8.0%	10.0%	"	"
3-64	"	"	"	"	씨돼지용 배합사료	생후대략 9개월 까지	12.0%	2.0%	11.0%	11.0%	"	"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70 호

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10 조 및 제

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

사료성분 등록을 고시한다.

1972. 5. 30.

서울특별시장

사 료 성 분 등 록 사 항

등록 번호	공장명	소재지	대표	사 료			사 료 의 성 분 량				유효기간	비고
				종 류	명 칭	용 도	조 단 백질	조 지방	조 섬유	조 회분		
3-39	한일사료 공업주식 회사	동대문구 상봉동350-6	차두홍	배합사료	부로일리전 대	부 화 후 대 략 4주까지	이상 20.0%	이상 3.0%	이하 6.0%	이하 9.0%	1972.5.30 1974.5.29	갱신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 제 119 호

도시계획지구결정(고도지구)

서울시 관내 성동구 충현동 일부 지

역에 대하여 건설부 고시 제 174 호

(72. 5. 8) 로 고도지구로 결정 고시

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5항

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.

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
도시계획과, 시민과 및 관할구청 시민
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

제인에게 보인다.

1972. 5. 29.

서울특별시장

1. 고도지구 설정조서

구 분	고도제한	위 치	면 적	비 고
최고고도지구	성곽높이	성동구 충현동	32,322 ^m	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도면은 서울시장 도시계획과, 시민과 및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. 끝.

⑤ 서울특별시공고제 120 호

도시계획도로일부변경결정

1. 당시 관내 도시계획 도로인 응봉
시민아파트 진입도로에 대해서 건설
부고시제 186 호(72.5.11)로 변경
(폐지)결정 고시되었으므로 도시계

획법 제 12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거
이를 공고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
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3. 도로 변경 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폐지	중로	3		12 ^m	314 ^m	응봉동산 7-2 (대로 3-26)	응봉동산 7-1 (응 봉시민아파트입구)	8 미터 및 6 미터 도로 분리신설

첨부: 건설부 고시문 사본. 끝.

1972. 5. 30.

서울특별시장

⑥ 서울특별시공고제 121 호

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허가명의변경
서울특별시 공고제 177 호(71.9.3)로 허
가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시행자
를 도시계획법 제 24 조 규정에 의거
다음과 같이 변경허가 하였기 공고한다.

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
영등포 구청 및 국회 내무위원회 국회공
무원 주택조합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
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2. 5. 31.

서울특별시장

사 령

◎ 1972. 6. 1.

이 성 훈

지방간호 기원보에 임함.

2 호봉을 급함.

아동보호소 근무를 명함.

정 정

시보 제 232 호(72.5.18)에 게재된
서울특별시 훈령제 357 호(72.5.18 제정)
서울특별시 민원사무 처리규정 시행세칙
중 부칙 제 3 항(폐지규정)은 다음과
같은 내용에 대한 착오이유기 이를 정
정한다.

1. 사업집행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림동
산 105 의 3 의 13 필지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
국회내무위원회 회주택조합공사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:
국회내무위원회 국회공무원 주택단지
(당초) 조합장 이 종 수
(변경) 조합장 한 중 건
4. 사업의 착수 준공년월일 :
착 공 : 1971. 11. 5.
준 공 : 1972. 10. 30.
5. 기 타 사 항
가. 본 사업집행상 발한 제반 조건
및 지시사항의 의무이행을 승계한다.
나. 사업집행자는 도시계획법에 정한
제반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착 오 내 용

정 정 내 용

(3) (폐지규정) 1970. 9. 30 자
서울특별시 훈령제 342 호 서울특별시
민원서류 처리규정 시행규칙은 이를
폐지한다.

(3) (폐지규칙) 1971. 6. 25 자
서울특별시 훈령제 352 호 서울특별시
민원사무 처리요령은 이를 폐지한다.